

의안번호	2213598
의 퇴 인	나경원의원
회 답 일	2026. 1. 26.
추계번호	25B559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7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6조의2(세부계획의 수립)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1항) 1.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창업기업의 인공지능산업 분야 진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15조의2(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연산·처리에 필요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등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u>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u> <u>1.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정책 개발</u> <u>2. 인공지능 국제규범 수립 및 변경</u> <u>3.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26조의2(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 지원)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모델 등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독자적인 인공지능모델(이하 “한국형인공지능모델”이라 한다)의 개발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1.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2.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및 제공 3. 민간 기업 간 데이터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4. 한국형인공지능모델의 공공부문 우선 도입 및 활용 5. 한국형인공지능모델의 해외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6. 그 밖에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형인공지능모델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26조의3(인공지능활용교육 강화)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인공지능활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활용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에게 인공지능활용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디지털취약계층이 인공지능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활용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37조의2(기금의 설치 등)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의무규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제3항) 1. 기본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세부계획의 시행 2. 제15조의2에 따른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3.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중소기업등 특별지원 및 창업의 활성화 4. 제2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 및 생태계 조성 지원 6. 인공지능활용교육 강화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6조의2(세부계획의 수립) 신설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세부계획은 연구용역 실시 등 별도의 소요비용 없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 인력으로 수립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미대상 -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15조의2(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26조의2(한국형 인공지능모델 개발 지원) 신설	
6	안 제26조의3(인공지능활용교육 강화) 신설	
7	안 제37조의2(기금의 설치 등) 신설	

2. 상세 사유

-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 지원, 인공지능 활용교육 강화(안 제15조의2, 안 제26조의2, 안 제26조의3)
- 개정안 중 다음 각 조항은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현행 예산사업이 존재하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으로 인한 사업의 확대나 사업 방식의 변경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향후 예산 규모의 변동을 추계할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 및 2026년 예산		
1	안 제15조의2(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신설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6
		AI컴퓨팅자원 활용기반강화	국내 AI 생태계 지원을 위한 GPU 서버 확충 지원, GPU 임차, 대규모 클러스터링 지원 등 통합운영환경 구축 지원 등	21,087
		한국산업은행 출자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만관 공동출자를 바탕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여, 첨단 AI 반도체(GPU 등) 기반으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118
2	안 제26조의2(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 지원) 신설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6
		AI컴퓨팅자원 활용기반강화	국내 AI 생태계 지원을 위한 GPU 서버 확충 지원, GPU 임차, 대규모 클러스터링 지원 등 통합운영환경 구축 지원 등	21,087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글로벌 수준의 독자적인 AI모델의 신속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지원 － 고품질 데이터를 정예팀 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지원하고, 목표하는 모델 구조 및 학습 전략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구축·가공	300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 지원	기업 등이 해외 AI 우수연구자를 유치하여 도전적 AI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AI 고급인재 양성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AI 연구생태계 조성 기여	100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위 사업들을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로서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을 위한 GPU, 데이터, 인재 지원을 추진 중임				

연번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 및 2026년 예산		
3	안 제26조의3(인공지능활용 교육 강화) 신설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6
		미래 디지털 인재양성 및 저변확대	•미래세대 SW·AI교육 활성화 초·중등 학생의 디지털 기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역량 함양을 위해 프로젝트 중심 프로그램 연중 운영 및 AI·SW 교육 문화 확산 등 추진 •예비교원 SW역량 강화 예비교원의 AI·SW 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교수·학습 설계 및 실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 •EBS-SW플랫폼 구축·운영 AISW에 관심 있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한 EBS-SW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숲) 지원 •특성화고SW·AI교육 강화 AI·SW 산업 분야를 선도할 실무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운영, 교사역량 강화 등 •한국코드페어 및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미래 사회를 주도할 청소년·대학생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알고리즘 설계 능력 발휘 기회 제공	239
		지역디지털 인재양성 (SW마이스터고 지원)	SW마이스터고 고등학생 대상 AI·SW교육 및 환경조성, 취업 및 전공지식 함양 등 지원	30
		지역디지털 인재양성 (정보소외지역SW교육지원 강화)	AI·SW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대상으로 SW미래채움센터 구축·운영, 전문강사 양성 등을 통해 초·중등학생의 AI·SW 교육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284 ¹⁾
주: 1) 국비 154억원, 지방비 130억원을 합산한 금액임				

□ 인공지능미래기금(안 제37조의2)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미래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표 1] 인공지능미래기금의 재원 및 용도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시행 -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등 특별지원 및 창업의 활성화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 및 생태계 조성 지원 - 인공지능활용교육 강화 - 그 밖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기금의 재원이 되는 정부의 출연금,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나, 현실점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